

● 제319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6. 23.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심미경 의원 외 26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23. 05. 30.
- 다. 회부일 : 2023. 06. 05.
- 라. 의안번호 : 8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결손 문제가 심화되고, 물질적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정신건강(마음건강)과 관련한 지표는 악화되는 등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 시책의 강화 및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임
- 그러나 현행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관련한 법적·행정적인 체계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모두 부처와 조직별로 산재되어 있고, 사안별 대응에 치중되어 있는바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체계의 구축을 위해 관련 시책을 개선·정비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의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청소년 마음건강 악화 문제 대응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¹⁾ 구성을 제안함.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 유해 환경 노출 심화 등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은 41.3%(전년 대비 2.5%p 증가), 우울감 경험률은 28.7%(전년 대비 1.9%p 증가)이고, 2021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살(자해)로 나타남.
- 개인의 정신건강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²⁾
- 이에 정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부처별로 아동·청소년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2) 국회입법조사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2021.5.11.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는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악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2조 및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 3에 근거하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실시, 지역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사이버센터, 청소년 상담 1338채널 등을 운영하고, 동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폭력·학대 등 청소년 피해자의 긴급구조와 법률 및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임.

-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청소년 마음건강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인력 대폭 증원 ▲실시간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채널 신규 개설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신규 운영 ▲민간 전문 기관과 연계한 긴급 협력망 구축 ▲상담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3월 ‘상담·마음건강팀’을 신설하여 기존 3개 부서에서 각각 지원하던 상담·마음 건강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생명존중을 위한 학교별 연수 강화 등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대응 역량 제고 ▲위(Wee) 센터,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권역별 거점병원(4개)과 상담·치료기관 지정(240개) 등을 통한 마음

건강 위기학생 집중 지원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심리정서 회복탄력성 지원 ▲관계가꿈 및 사회성 강화도움자료 보급 ▲대면상담을 주저하는 학생들을 위한 ‘메타버스 심리상담’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점검하고 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프라 및 전문인력의 부족, 한정된 대상,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기관 간 연계, 청소년의 접근성 부족 등이 한계가 여전히 존재함.
- 다수의 연구와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가 필수적이나 기관 간 서비스가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구성돼 원활한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시군구 단위에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여러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과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³⁾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에 대한 종합적·전문적·통합적인 시책 구현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COVID-19 사태 전후로 청소년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고 사태 후 이들은 답답함, 불안과 걱정, 우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⁴⁾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임.
- 또한 평생진로교육국(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 시민건강국(고위험군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연계 등 지원)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

3) 한국청소년연구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2021.12.31.

4) 한국청소년재단·코리아픽스,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2020.8.12.

평생교육국(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 및 성과평가)을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 부합함.⁵⁾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취 결과

- 결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6)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취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음.
-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위원회별 사전협의는 다음과 같음.
 - 평생교육국의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사전협의와 업무지원에 대해 동의하였고, 서울시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과 시민건강국의 소관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각각 사전협의에 대해서만 동의함.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붙임.1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안)

□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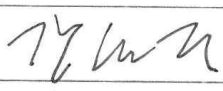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2.24>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명칭 :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대표발의자 : 심미경

□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 (O/X)	업무지원 (O/X)	확인서명 (상임위원장)
(서울시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	교육위원회	O	X	
(서울시)시민건강국	보건복지위원회	O	X	
(서울시)평생교육국	행정자치위원회	O	O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